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8호의3서식] <신설 2016.1.21.>

# 전용용기 제조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10일 |
|---|---|---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신고인 | 상호(명칭)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 | |
| | 주소 (전화번호: ) | | |
| 업종(생산 전용용기) | | 등록번호 | |
|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연월일 | . . . | 재개업 예정 연월일 (휴업인 경우) | . . . |
|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사유 | | | |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

전용용기 제조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##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휴업·폐업의 경우: 등록증 원본<br>2. 재개업의 경우: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| 수수료 없음 |

처리절차
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수 | → | 검토 | → | 실태조사 | → | 결재 | → | 신고수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인 | | | | | | 유역(지방)환경청장 | | | |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